[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7.12.4> (앞 쪽)

수렵면허 □갱 신 □재 교 부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수렵면허증의 종류	□ 1 종 □ 2 종				
⑤수렵을 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⑥수 렵 방 법					
⑦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⑧유 효 기 간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갱신하는 경우	10,000원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나. 증명사진 1매

다. 수렵면허증

2. 재교부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매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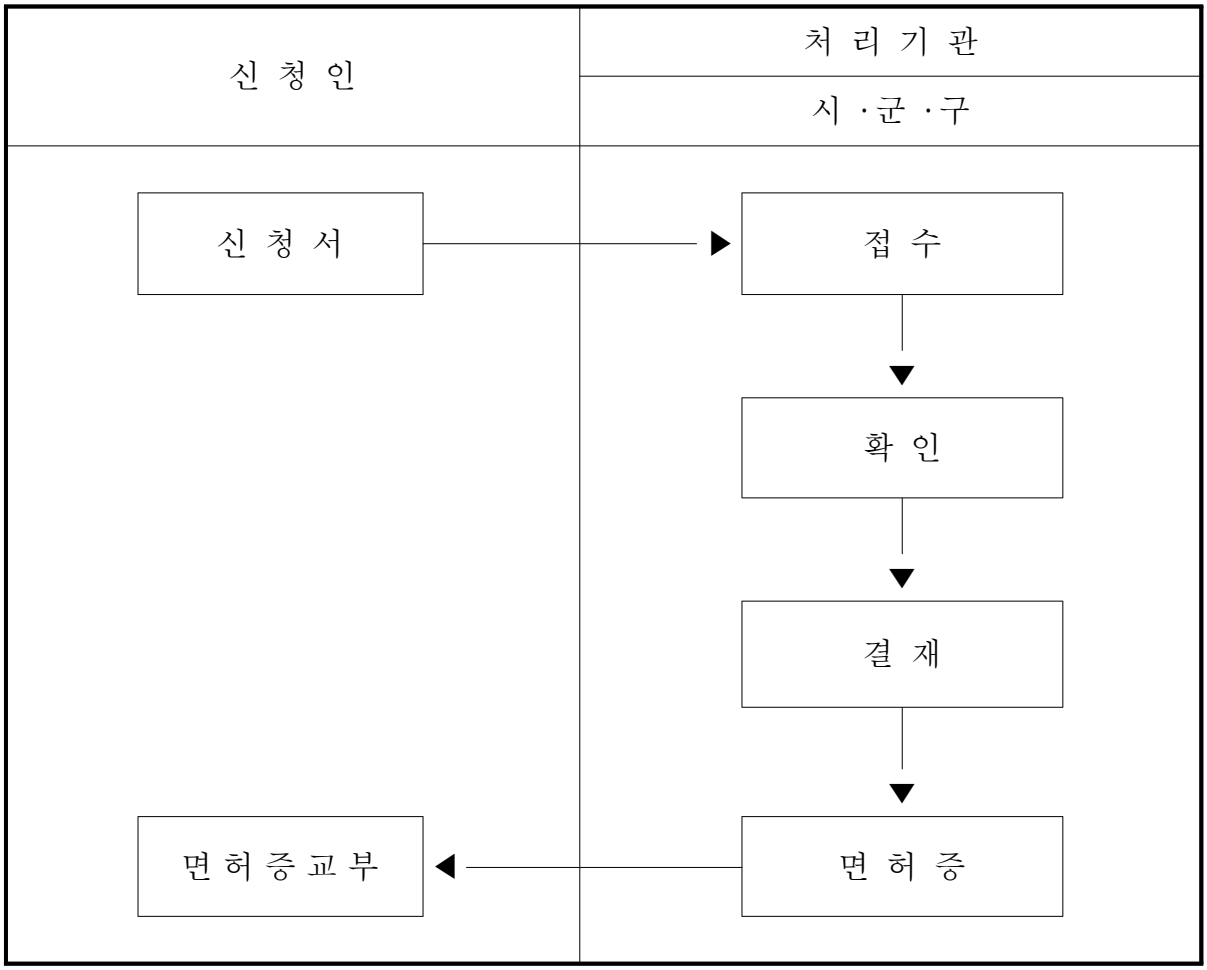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